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대상 확대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79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복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대상 확대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

다. 회 부 일 : 2025. 12.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며,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규모 보도 조직을 운영함에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모든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확대하여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주요 방송사업자에 동일한 제도를 적용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Ⅲ. 검토의견

1.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대상 확대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u>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u> ----- ----- -----.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u>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u>	1. <u>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u> 2. <u>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u> 3. <u>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u>
③ (생략)	② ----- <u>보</u> <u>도책임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u> ----- -----.
	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 본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 등 ‘공영방송인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보도전문편성PP’를 대상¹⁾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²⁾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사업자는 ①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② 임명 시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③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함.

1) 「방송법」

제20조(방송사업자의 대표자 임명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를 말한다)의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각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1.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3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이사회가 임명한다.

2) 「방송법」

제21조(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등) ①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는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보도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 과거에는 방송사업자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방송 보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옴에 따라, 지난 2025년 8월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및 보도에 대한 책임성이 중대한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편성PP를 대상으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운영이 의무화되었음.
- 그런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의무 대상에 민영방송사,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등이 제외되어있어 방송 보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대상을 모든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편성PP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재 보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국민의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방송사의 보도에 관한 공정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안에 따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제도가 적용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보도전문편성PP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전문편성PP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지 상 파 방 송 사 업 자	종합편성 (33개사)	- 중앙지상파방송(3)	KBS, MBC, SBS
		-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IBS), 강원민방(G1), OBS경인TV(OBS)
		- 라디오방송(3)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티비에스(tbs-eFM)
		- 지상파DMB(1)	YTNDMB
		보도 전문편성 (1개사)	- 라디오방송(1)
	전문편성 (10개사)	- 교육전문(1)	EBS
		- 음악방송(2)	경인방송, 국악방송
		- 종교방송(5)	기독교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 영어(1)	국제방송교류재단
		- 교통(1)	도로교통공단
	소계		44개사
종합편성PP(4개사)		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전문편성PP(2개사)		YTN, 연합뉴스TV	
계		50개사	

※ 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는 현행법상으로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임

○ 다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의무화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된 현행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025. 8. 26. 시행된 「방송법」(법률 제21043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2025헌마1587)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측은

①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의무화가 방송사업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②임명 동의에 관한 절차를 이사회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편성위원회가 정하는 방송편성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범위 확대에 앞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경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둘째, 작년 8월 현행법 개정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사업자의 후속 조치 진행 경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난 방송 3법 개정으로 총 5개 방송사업자(KBS, MBC, EBS, YTN, 연합뉴스TV)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신설되었

으나, 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후속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음.

-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운영되기 위하여는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종사자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을 정하고,

② 이를 바탕으로 선출된 각 방송사업자별 종사자 대표가 각 방송사업자의 편성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여

③ 총 10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가 임명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도책임자의 범위, 보도분야 직원의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방송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여야 함.

- 그러나, 2026년 2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1인만 임명되어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규칙 제·개정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임.

- 현행법상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인 5개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한 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숙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도입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지역MBC노조협의회는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방방송은 경영상의 이해가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보도의 독립성 위협 및 편향적 정치개입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는 민영방송사의 대주주가 주주들의 사익 수단으로 보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지역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에 동의하며, 동의를 얻어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보도분야로 한정할 경우 규모가 작은 민영방송은 일부 직원의 사측 결집으로 인해 제도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취재·보도·제작·편성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넷째,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는 다음과 같음.
- SBS는 2017년부터 노사 협의를 통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법률에 의무화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업자의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 조항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9개사)는 개정안에 따르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차단되어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JTBC**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민영방송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고, 정기적인 재승인 심사 등 행정규제와 보도윤리강령, 시청자위원회 등 내부 자율 통제장치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
- **TV조선**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헌법상 기업 경영상의 자유와 직결되는 민간기업의 경영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투표 부결에 따른 선임 지연 등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 방송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
- **채널A**는 언론의 공적 역할 강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민영방송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주주의 권리와 경영 자율성이 우선적으로 보호될 필요가 있고, 공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인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규제의 목적과 수단 간 균형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
- **MBN**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자율적으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운영 중임에도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민영방송사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이를 종합하면, 방송 보도의 공정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함께, 현재 현행법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규정에 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다는 점, 현행법상 보도책임제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 대하여도 아직 제도의 운영 효과와 미비점 등을 확인해보지 못하였다는 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의무 대상 확대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